

【 손해사정업무 위임장 】

위임인은 **사고당사자**의 손해사정업무를 보험업법 제18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손해사정업무로써 정한 사항과 손해사정과 관련된 아래에서 정한 위임인의 정당한 권한 일체를 귀사에 위임합니다.

1) 보험업법 제188조의 법정 손해사정업무

- ① 손해발생 사실확인
 - ②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 ③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 ④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 · 제출의 대행
 - ⑤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전술

2) 보험업감독규정 제9-21조 (손해사정서 접수 및 처리절차 등)

3)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20조(전문인의 활용)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법률자문, 의료분석, 기타감정, 의료감정 등 해당 전문인의 진단, 자문 분석, 감정 등의 업무

4) 기타 위임업무

- ① 경찰서·소방서·근로복지공단·세무서·의료기관 및 관공서 등 정보공개청구 및 열람·발급업무
 - ② 보험(공제)회사 계약사항 및 지급내역 등 확인
 - ③ 기타 손해사정 조사업무와 관련한 위임인의 권한 일체

2026 년

작성날짜

위임인 (갑)	성명	위임인 (서명 또는 인)	사고당사자와 관계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민번호	연락처	연락처
수임인 (을)	 지산손해사정법인 JISAN CLAIM ADJUSTMENT Co.,Ltd.	 금융감독원 제B0000718호 법인등록번호 제 534-87-02588 호		

【 손해사정 보수약정서 】

제 1 조 (업무의 위임내용)

20 년 월 일 시 분경,

에서 발생한

보험사고 당사자 **사고당사자** 의 손해사정업무를 “갑”은 보험업법 제185조에 따라
‘손해사정업무 위임장’과 같이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하는 보수약정을 체결한다.

제 2 조 (업무의 범위)

- 개인보험 → 생명·상해보험, 단체보험, 유사보험 등 가입증권 전체
 자동차보험 → 대인배상·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 등
 배상책임보험 → 일배책·시배책·근재 등 기타 손해사정()

제 3 조 (보 수)

- ① 손해사정 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을 손해사정서의 사정금액에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손해사정 절차에 따른 사정금액이 사정서와 다르게 확정될 경우 그 금액을 사정금액으로 하고, 사정서가 작성된 후 소송에 의하여 판결금액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금액을 사정금액으로 한다.
- ② 보수는 손해사정의 제반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전부 또는 일부면책, 후유장해, 후발손해, 부활사건, 면·부책판단, 특별한 약관해석 등 난이도에 따른 사정 업무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

손해사정 보수료	보수율 % [한글 보수율기] (VAT포함)
----------	-------------------------

* 단, 손해사정 보수료가 110만원 미만일 때에는 최저보수료는 110만원으로 한다. (VAT 포함)

제 4 조 (기타 비용 부담)

의무기록과 진단서 발급 및 법률·의료자문비용 등은 “갑”이 부담한다.

제 5 조 (보수지급의 지체 및 임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

- ① “갑”은 손해사정을 완료한 날 또는 손해사정금액(복수의 손해사정을 한 경우는 각각의 손해사정금액) 확정 또는 수령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약정된 보수를 “을”에게 지급하며, 지급기일이 초과된 경우에는 별도로 지연금의 월2%를 지연이자로 지급한다.
- ② “을”이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른 손해사정 업무에 착수한 후, “을”的 귀책사유 없이 “갑”이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제3조(보수)에서 정한 최저보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을”이 손해사정서 작성을 완료한 후 “갑”이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갑”은 제3조(보수)에서 정한 보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6 조 (계약의 효력)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 및 사회통념에 따르며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조 (특약사항)

2026년 작성날짜

위임인 (갑)	성명	위임인 (서명 또는 인)	사고당사자와 관계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민번호	연락처	연락처		
	주소	주소				
수임인 (을)	 지산손해사정법인 JISAN CLAIM ADJUSTMENT Co.,L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05-15, SH드림타워 202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93, 50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1606호▶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77번길 20.2층					

【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

* 지산손해사정법인은 귀하의 위임에 의거한 보험업법 제188조의 손해사정업무로서 관련 서류를 징구하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사정서를 보험회사 또는 보상의무자에게 제출할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조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련 법률에 따라 아래의 사항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구하며 아래사항에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사항

본인은 귀사가 개인(신용)정보와 보험사고 조사 및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신용)정보[경찰, 검찰, 법원, 소방서(화재증명, 119구급구조), 공공기관(읍·면·동사무소, 근로복지공단(산재),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세무서 등), 공제조합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판결문, 증명서, 확인서, 진료기록,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포함]를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고객이력관리, 민원처리 및 소비자보호, 증빙서류보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하며 동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사항

귀사는 개인(신용)정보와 상기 보험사고 조사 및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를 보험사고조사 및 손해사정업무 등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에 따라 보상의무자, 배상책임자,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보험금지급 실사 및 보험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손해사정업체, 의무기록 발급 업체, 의료자문센터 등), 금감원 등 분쟁조정담당부서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동 개인(신용)정보는 위 제공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동의사항

귀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정보(보험사명, 보험기간 등 보험가입 사항), 보험금지급정보(보험사고일자, 사고내용, 보험금지급내역)를 보험사고조사 및 손해사정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으로부터 조회할 수 있으며 본 조회동의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사항

귀사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수집, 이용 및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기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각 동의와는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상기 본인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를 상기 목적으로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5. SMS 등 수신 및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사항

본인은 귀사가 [업무진행, 손해사정서 교부, 종결안내, 보상서비스 등]을 위한 안내서비스(SMS, LMS) 수신에 동의하며 귀하의 의무기록 또는 보험증권, 지급내역서 등 당사의 마케팅 활용목적으로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동의자 성명:

위임인
(서명 또는 인)

▶ 정보 제공자와 관계 :

관계

*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가(친권자가 없을 경우 법정후견인) 서명하며,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부모 중 일방이 부모공동명의로 동의 및 서명할 수 있습니다.